

## 「더 플래티넘 파인애비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공급 개요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송화리 12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 ~ 지상 최고 15층, 21개동, 총 1,048세대 중 일반공급 321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 세대수

주택형	보훈청		국군복지단	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74	2(10)	1(5)	1(5)	1(5)	1(5)	-	-
84	4(20)	2(10)	3(15)	2(10)	3(15)	1(5)	1(5)

- **당첨예정자** :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으로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대상자** :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500%의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공급일정안내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6.04.17.(금)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6.04.27.(월) 예정	· 인터넷 청약접수(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접수 (www.applyhome.co.kr)
당첨자발표	2026.05.06.(수)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접수 (www.applyhome.co.kr)

-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④ KB국민인증서, ⑤ 토스인증서 ⑥ 신한인증서 ⑦ 카카오페이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 단, 견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대표번호로 별도 문의)

### 특별공급 자격요건

- **기본요건**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 및 통보된 분

#### ■ 입주자 저축 구비 여부

구분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분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예비 포함)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단, 부부에 한하여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둘 다 당첨 시 청약 접수일시가 빠른 사람의 당첨의 건은 유효한 당첨으로 간주하며, 청약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의 건은 무효로 간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li> <li>•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 및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라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군복지단이 추천(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우선 공급 대상자(해당지역 청약)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table border="1" data-bbox="225 707 1506 987">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청약자격요건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 (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li>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청약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p><b>[청약예금의 예치금액]</b></p> <table border="1" data-bbox="244 1756 1461 1854"> <thead> <tr> <th>구 분</th> <th>평택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h>서울특별시</th> <th>인천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li> </ul>	구 분	평택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구 분	평택시 및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집공고일 전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신청 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 내역과 상이하

게 청약접수가 불가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청약 할 경우 부적격처리 됩니다.

**단, 본인이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전 서류확인 및 관계기관의 전산검색을 통한 과거당첨사실, 주택소유사실 등 입주대상자 및 세대원의 자격확인을 통해 부적격 사항 확인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 기관(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 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향 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견본주택,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더 플래티넘 파인애비뉴 투시도



### 더 플래티넘 파인애비뉴 위치도



현장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123번지 일원

■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685-1

■ 대표번호 : 031-657-1277